

※연결번호

시 험 과 목 명

응 시 번 호

성 명(한글)

검

인

곽희준

감독관

확인

제2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답안지

감독관

확인

※연결번호

시 험 과 목 명

점 수

채점위원인

집계자확인

형 법

※

※

※

문 1 - 1

1. ~~결론~~ 결론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근거

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127조)

②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하고 개체가 되는 공무원의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공익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비밀이 누설되어서 국가의 안전 또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어야 한다.

누설이란 공무원이 비밀을 공개한 것만 있는 제3자가 지득할 수 있게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로 누설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공공의 위임을 해제한 후에도 성립한다.

③ 판례는 선민의 정유에 공무원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적 기밀"을 그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비록 개개의 수리조합에 아무런 기밀이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양면시험용지 1부 및 등기신청서양식 1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면시험용지 및 등기신청서 위쪽의 각 해당란에 모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 안에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는 페이지 순서대로 기재하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등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지에 인쇄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가 기재한 답안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답안지에 인쇄된 시험과목을 기준으로 채점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용 법전을 가져가거나 훼손(낙서 등 포함)하여서는 안되고,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시간 종료된 후에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답은 4항이나 하더라도 ~~그러한~~ 구속영장의
반부죄라도 ~~안~~ ~~있~~고 ~~그~~지휘내용에 구속여부가
답을 4항 안에도 것 만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한다고 하겠다.

④ 따라서 2항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문 1-2

I. 결론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고4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II. 근거

① 라인을 고4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라인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31조)

고4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구성요
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이 고4항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는 피고의
공범중 대항범에게 해당한다.

피고의 공범이란 범의가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반드시 2인 이상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전제되는 범의유형을 만하여
그 중 대항범이란 상호 대항하는 2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범의를 만한다.

③ 대항변의 경우 형법은 각칙 형식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그 형에 대하여 직접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특히 대항변의 내부항가자 401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에 태도이다.

④ 형법 제127조의 무인을 보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의 형사처벌만 규정 하였으므로 그 내부항가자의 대항하는 것이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그 정함이 없다.

⑤ 따라서 판례에 태도에 의하면 무인제 그의 형식에 대한 형법 제131조의 파는 성립될 수 없다.

문제 2

I. 결론

형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II. 근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한다

② 횡령죄는 자기재산, 타인소유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사선, 법륜, 위탁, 임차, 신탁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많고 부동산의 경우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한 것을 인정 한다.
 형법은 위헌선정고지기에 반해 불법행위를 실행
 하는 단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헌법으로 형법
 행위를 하는 동안 적당히 하려고 기수가 되어
 ● 헌신성도 손해를 거의 보지않고 처리 한다.
 피해자의 손해를 그 보충책으로 한다.

~~③ 판례는 채권자로서 아직 채권으로 인해~~

③ 판례는 채권자로서 아직 채권으로 인해
 거차지 양도한 양도인은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상환금에 채권을
 부담하여 돈을 가지고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대한
 관할권까지 위대 상환금에 기한에 금원을
 보충하는 자리에 있다거나 또는 양도채권
 이전에 관해 상환금으로 위임받아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하여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을 양수인에게 대한 관할권까지 타인의
 재물로 보충하는 자에 대해 양도하고 하였다.

~~④ 선문상 법은 자신이 양도한 담보채권으로~~

④ 선문상 법은 자신이 양도한 담보채권으로
 채권을 아직 채권으로 하여 양도인을 기차로
 부담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그와
 관할권까지 그 이전에 ~~채권으로~~ 보충하고
 한 수 있는 것은 양도인에게 해당하여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에 의해 정해진다.

형법에 성립하지 않는다.